

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. 9. 10 선고 2023가단13582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학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유재준

변 론 종 결 2024. 7. 23.

판 결 선 고 2024. 9. 10.

주 문

-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-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C 사이에 부천시 D아파트, E호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20. 12. 22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419,37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청구원인의 요지

원고는 C에 대하여 2021. 3. 23. 확정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차전101108 지급명령에 기한 원금 419,370,000원의 채권이 있다. C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12. 22.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,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어 원물반환이 곤란하므로 피고는 피보전채권액에 상당하는 419,370,000원을 가액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판단

가.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거나 공동담보의 부족현상이 심화되어야 하는 것인바,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, 그 입증책임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쪽에 있다.

나.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당시 C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거나 이로 말미암아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,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.

판사 최지경